



##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소독방법 및 증명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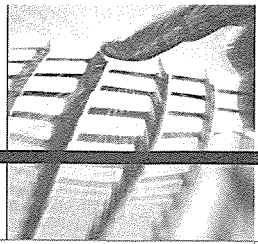
『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.

이해를 돕기 위해 소독방법 및 증명방법을 현행시행안과 개정안, 개정 사유로 정리하여 표로 마련하였으니 참고 하십시오.

(출처 : 국립식물검역소 <http://www.npq.s.go.kr>) - 편집자주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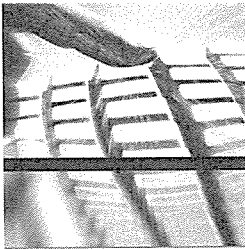
(주의) 표는 개정안중의 일부분일 뿐입니다. 개정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더 있으며 반드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수출하시기 바랍니다.

현 행	개 정 (안)	개 정 사 유
제3조(목재포장재 수출) 수출화물의 목재 포장재는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소독처리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 3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.	제3조(목재포장재 수출)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는 수입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으로 소독처리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 3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하는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입국의 검역요건의 용어와 소독처리에 대한 종류,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를 발행하는 곳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함</li> </ul>
제4조(수출검사신청 및 증명서 발급) ①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소독처리업체에서 수입국 검역요건에 적합한 소독처리를 한 후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(이하 "지·출장소장"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를 분할하여 수출할 경우 소독작업결과서를 재 사용할 수 있으며, 재 사용시 재고량에 대한 식물방역관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.	제4조(수출검사신청 및 증명서 발급) ①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(이하 "지·출장소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식물검사신청서에는 소독처리업체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 ③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를 분할하여 수출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독작업결과서 뒷면의 목재포장재 재고량 확인표의 확인란에 식물방역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소독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를 분할하여 수출할 경우 목재포장재 재고량 확인을 수출업자나 대리인의 확인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항을 구분하여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
②~③ <신 설>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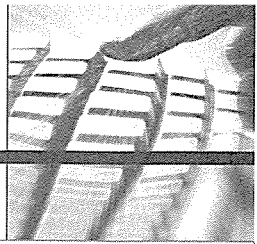
## | 식 물 검 역 |

<p>②제1항의 수출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식물 방역관은 <u>소독작업결과서의 확인으로 현장검사, 실험실검사 및 소독처리 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</u>하고 소독처리사항이 부기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</p>	<p>된 목재포장재에 <u>소독처리마크만</u> 표시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이 확인 서명할 수 있다.</p> <p>④식물방역관은 제1항에 의한 수출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<u>현장검사, 실험실검사 및 소독처리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</u>하고 소독작업결과서의 확인으로 소독처리사항이 부기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</p>	<p>○ 조항변경과 문맥수정</p>
<p>제5조(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) (생략)</p> <p>제3장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의 관리</p> <p>제6조(소독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지·출장소장은 열처리시설 검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열처리시설조사표를 작성하여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식물검역소장은 열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<u>별지 제5호서식의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.</u></p> <p>④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체는 별도의 검사신청 없이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를 할 수 있다. (<u>신설</u>)</p> <p>제7조(소독처리마크의 신고 및 사용) ①소독처리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독처리업자는 <u>별표 3에 따라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신고서를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소독처리마크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사용</u>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5조(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장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의 관리</p> <p>제6조(소독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지·출장소장은 열처리시설 검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열처리시설조사표를 작성하여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식물검역소장은 열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<u>별표3의 소독처리마크 사용안내와 별표4의 목재포장재 열처리 주의사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.</u></p> <p>④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체는 별도의 검사신청 없이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를 할 수 있다. <u>다만, 청산(HCN)소독만 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체는 제외한다.</u></p> <p>제7조(소독처리마크의 신고 및 사용) ①소독처리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독처리업자는 <u>별표 3의 소독처리마크 사용안내에 따라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신고서를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소독처리마크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사용</u>하여야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올바른 열처리소독과 마크사용을 위해 소독처리마크 사용안내 및 목재포장재의 열처리 주의사항을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교부시 신청인에게 통보함</p> <p>○ 청산으로는 목재포장재를 소독할 수없으므로 청산소독만 하는 방제업체에 대해서는 소독처리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 신설</p> <p>○ 별표 3의 내용을 명시함</p>
<p>제8조(소독처리업자의 의무) ①소독처리업자는 <u>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된 소독처리마크를 표시</u>하고, 작업일지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작업일지에 그 처리내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의 공급내역 등 소독처리 관련자료를 최소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</p>	<p>제8조(소독처리업자의 의무) ①소독처리업자는 <u>별표4의 목재포장재 열처리시 주의사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하고, 소독처리한 후 지체없이 신고된 소독처리마크를 표시</u>하고, 작업일지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의 목재포장재소독처리작업일지에 그 처리내역을 기록·관리하여야하며,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의 <u>소독작업결과서(열처리업체는 목재중심부 온도자동기록표 포함)와 공급내역 등 소독처리 관련자료를 최소한 1년</u></p>	<p>○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소독을 신설된 [별표4] 열처리시 주의사항에 따라 행하도록 함</p> <p>○ 소독처리업자가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소독처리관련자료에 대해 명시를 명확하게 함</p>



## | 식 물 검 역 |

<p>②~③ (생 략)</p> <p>④ (신 설)</p> <p>제9조(소독처리업체 점검) 지·출장소장은 관내 신고된 소독처리업체의 소독 시설·장비의 상태, 소독처리마크 표지, 소독처리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(단서조항 신설)</p>	<p>간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 시설을 폐업 신고할 경우 증명서와 소독처리마크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소독처리업체 점검) 지·출장소장은 관내 신고된 소독처리업체의 소독 시설·장비의 상태, 소독처리마크 표지, 소독처리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, 제11조 제2항에 의해 중단 조치를 한 업체, 외국에서 부실소독으로 통보가 온 업체 등 부실소독업체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반기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열처리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반기동안의 수시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폐업처리된 소독처리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</li> <li>○ 필요시 수시 점검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단서조항으로 반기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반기동안 수시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
<p>제10조(소독처리시설 등의 변경사항 신고) ①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시설이 파손·개조 등의 사유로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·출장소장에게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1. 소독처리마크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새로 제작하여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</p> <p>2.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또는 소독처리마크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</p> <p>3. 증명서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</p> <p>제11조(소독처리증명의 중단) ① (생 략) ② 지·출장소장은 제7조1항 및 제8조를 위반하였거나 제9조에 의한 점검결과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독처리하거나 소독증명한 소독처리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고, 시정이 완료되어 재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8조제2항의 소독작업 결과서 발급 및 제7조의 소독처리마크 사용을 중단조치 하여야 한다</p>	<p>제10조(소독처리시설 등의 변경사항 신고) ①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시설이 파손·개조·이전 등의 사유로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·출장소장에게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다만, 열처리책임자 기재사항 변경시는 제외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소독처리증명의 중단) ① (생 략) ② 지·출장소장은 제7조1항, 제8조 및 제10조1항을 위반하였거나....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독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명시함</li> <li>○ 열처리책임자 및 소독처리마크 신고증 기재사항 변경시는 재교부 생략토록 하여 업무량 감축 및 민원편의 도모</li> <li>○ 규정 제10조제1항의 소독처리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이행 위반시 중단 조치를 하도록 규정</li> </ul>
<p>③지·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사항을 식물검역소장에게 지체없이</p>	<p>③지·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사항 및 제8조 제4항에 의한 신고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체 소독증명 중단·재개 및 폐업 조치를 관할 지·출장소에서 본소로</li> </ul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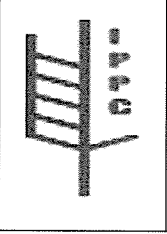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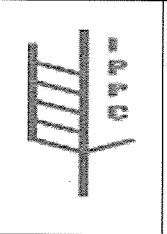
# | 식 물 검 역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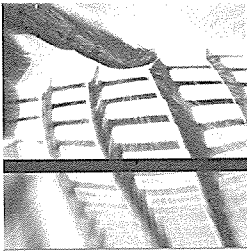
<p><u>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항을 식물검역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와 동시에 각 지·출장소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직접 보고와 동시에 각 지·출장소에 통보토록 함으로서 보고 및 통보절차 간소화 함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(열처리 시설 시행안)

현 행	개 정 (안)	개 정 사유
<p>열처리시설의 검사방법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열처리시설의요건</p> <p>1. 열처리 시설</p> <p>○ 목재중심부온도 측정장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목재포장재의 중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온도감지기(온도센서)를 포함하여 교정성적서를 받은 장치로 오차 범위는 <math>\pm 0.5^{\circ}\text{C}</math> 이하이어야 함</li> <li>- 온도 자동기록장치(온도감지기 포함)는 주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며,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세칙 통합고시의 <u>교정주기</u>에 따른다.</li> </ul>	<p>열처리시설의 검사방법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열처리시설의요건</p> <p>1. 열처리 시설</p> <p>○ 목재중심부온도 측정장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목재포장재의 중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온도감지기(온도센서)를 포함하여 교정성적서를 받은 장치로 오차 범위는 <math>\pm 0.5^{\circ}\text{C}</math> 이하이어야 함</li> <li>- 온도 자동기록장치(온도감지기 포함)는 주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며,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세칙 통합고시의 <u>교정주기(1년)</u>에 따른다.</li> </ul>	<p>○ 교정주기를 명확하게 명시함</p>

## (소독처리마크 시행안)

현 행	개 정 (안)	개 정 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소독처리마크</u></p> <p>아래의 마크는 목재포장재가 소독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임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p>XX-000</p> <p><u>YY</u></p> </div> </div> <p>1. 본 마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소독처리마크 사용 안내</u></p> <p>아래의 마크는 목재포장재가 소독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임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p>KR-000</p> <p><u>YY</u></p> <p>(또는YYDB)</p> </div> </div> <p>1. 본 마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어변경</li> <li>○ KR은 우리나라 국가코드로서 변함이 없음</li> <li>○ 수피제거 했음을 뜻하는 DB 마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표시함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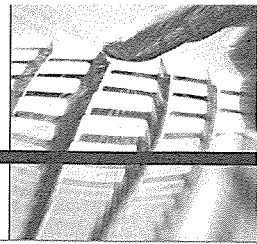


## | 식 물 검 역 |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symbol(로고):IPPC에서 승인한 심볼 (ISPM No 15, 부록II)</li> <li>○ XX : ISO의 2자리 국가코드 (예:korea⇒ KR)</li> <li>○ OOO :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국립식물검역소가 부여한 고유번호(확인번호)</li> <li>○ YY :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 (예 : HT, MB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symbol(로고) : IPPC에서 승인한 심볼 (ISPM No 15, 부록II)</li> <li>○ KR:ISO의 2자리 국가코드(korea⇒KR)</li> <li>○ OOO :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국립식물검역소가 부여한 고유번호(확인번호)</li> <li>○ YY :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 (예 : HT, MB)</li> <li>○ YYDB: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 (예 : HTDB, MBDB)</li> <li>○ 마크 재질은 인두형(반영구) 또는 고무인 사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독처리 되었으며 수피 제거 했음을 뜻하는 마크 설명 추가</li> <li>○ 마크재질에 관한 사항 추가</li> </ul>
<p>2. 소독처리업자는 필요한 기타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, 기타 정보는 혼란스럽지 않고,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속임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표지는 해독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, 증명대상 물품의 2개면 이상, 서로의 반대면 위치에 표시</li> <li>○ 표지 색상은 검정색, 남색, 청색 등을 사용하되 빨간색, 오렌지색은 사용하지 말 것</li> <li>○ 표지는 지워지지 않는 스탬프, 소인 등으로 표시</li> </ul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2. 소독처리마크사용 사용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독처리마크에 필요한 기타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, 기타정보는 혼란스럽지 않고,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속임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음</li> <li>○ 표지는 해독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, 증명대상 물품의 2개면 이상, 서로의 반대면 위치에 표시</li> <li>○ 표지 색상은 검정색, 남색, 청색 등을 사용하되 빨간색, 오렌지색은 사용하지 말 것</li> <li>○ 표지는 지워지지 않는 스탬프, 소인 등으로 표시</li> <li>○ 수피가 제거되고 소독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HTDB(MBDB) 마크 사용</li> <li>○ 소독처리마크사용신고서'를 작성하여 국립식물검역소에 우편또는 인편으로 신고</li> <li>○ 소독처리마크는 국립식물검역소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사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독처리마크사용방법으로 제목 변경</li> <li>○ 수피제거 표시마크사용방법 추가</li> <li>○ 마크 사용신고방법 추가</li> <li>○ 마크사용은 신고증을 교부받은후에 사용토록 안내</li> </ul>

### (목재포장재 열처리 주의사항)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u>&lt;신 설&gt;</u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목재포장재 열처리시 주의사항</u></p> <p>1. 열처리 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열처리 시설이 열처리시설 요건에 적합해야 함.</li> <li>- 열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구역 식물검역소에 통보한다.</li> <li>○ 온도센서는 목재중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, 열처리 시설내 가장 저온을 나타내는 부위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.</li> <li>○ 측정된 목재중심부 온도는 자동으로 기록되고, 기록된 내용이 출력 가능하며, 기록지의 표시 방법(처리 일자 및 시간, 온도, 눈금 등)이 적절하여 판독이 가능해야 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열처리시설업자의 열처리소독시 주의할 사항 신설</li> </ul>



## | 식 물 검 역 |

○ 온도측정장치(온도센서 포함)는 주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며,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'국가교정기관 인정제도 운영세칙 통합고시'의 교정주기에 따른다.(1년)

### 2. 목재포장재 열처리

○ 온도센서는 열처리 시설 내의 가장 저운을 나타내는 부위(지면에서 10~20cm 지점 등)에서 측정하되 열처리되는 목재포장재 중 가장 두꺼운 목재 중심부 온도를 측정해야 하며, 온도센서 설치시 온도센서의 굵기에 맞도록 천공을 하고 외부 공기가 직접 온도센서에 전달되지 않도록 실리콘 등으로 밀봉하여 처리해야 한다.

○ 고내 목재포장재의 균일한 열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열처리 시설 고내의 온도가 균일하도록 송풍기(순환장치)를 작동해야 한다.

○ 각재, 판재 등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을 열처리 할 경우에는 각각의 목재 사이에 열기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간목(사이목)을 사용하여 열기가 균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○ 열처리시설 지면에서 높이 20cm 정도의 받침목을 설치하여 그 위에 열처리대상 목재를 적재하여 열처리를 실시하고, 시설내의 열처리 취약부위까지 열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.

○ 열처리는 목재중심부 온도가 56°C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하되 중심부 온도가 56°C에 도달되는 시간이 충분하게 되도록 한다.

○ 규정된 열처리를 하고 열풍기를 중단한 상태에서 열처리실 개방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개방하여 잡열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한다.

### 3. 열처리된 목재포장재의 관리

○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는 규정된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해야 한다.

○ 소독처리마크는 지정된 소독처리 업체에서 열처리 시설자 책임 하에 사용한다.

○ 열처리 된 목재포장재의 보관 및 관리

- 열처리 안된 것과 구분하여 격리 보관하여야 하며, 병해충의 재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(바닐이나 천막 등으로 피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
### 4. 목재포장재 열처리 내역 기록관리

○ 목재포장재 열처리 작업일지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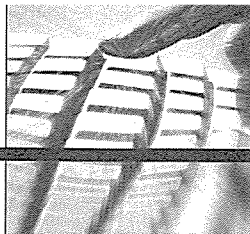
- 매 열처리 건별로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목재포장재 열처리 소독작업결과서(목재중심부 자동온도 기록표 포함), 공급내역 등은 보관하여 지정된 시설에서 열처리한 근거 자료를 남겨두어야 한다.

### 5. 기타 사항

○ 열처리된 목재포장재를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, 공급업체에서 수출하기 전까지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되도록 주시시켜야 한다.

○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의 관리 부실로 병해충의 재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열처리소독을 하여야 한다.





(재교부신청서)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(신 설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재교부신청서 (뒷면)</u></p> <p>1. <u>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재교부신청시 주의사항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시설이 파손·개조·이전 등의 사유로 열처리 시설검사증명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구역 식물검역소에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 변경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받으시고 관할 구역 식물검역소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</li> <li>○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열처리책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변경사항을 관할구역 식물검역소에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시고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재교부 신청은 생략합니다.</li> </ul> <p>2. <u>소독처리마크신고증 재교부신청시 주의사항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독처리마크신고증 재교부신청은 마크가 변경되었거나 추가제작 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열처리시설 검사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 신고증 재교부 신청시 주의할 사항 신설</li> </ul>

주의) 수출 전 반드시 국가별 세부 요건 사항을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([www.npqs.go.kr](http://www.npqs.go.kr)) 목재포장재 검역정보 ⇒ 목재포장재 검역시행국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